

서울시립대학교 생활관 수칙

제정 2006.10.19

개정 2007.01.31

개정 2008.10.13

개정 2012.06.13

개정 2014.11.05.

개정 2015.11.18.

개정 2019.05.29.

개정 2019.11.06.

개정 2020.10.26.

개정 2026.06.16.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제16조 및 생활관 입주자가 입주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주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 입주가 승인된 자(이하 “관생”이라 한다)는 생활관 입주절차에 따라 신상명세서 및 서약서를 생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상담) 관장은 관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관생 또는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고 관생 및 학부모도 관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외박) 2일 이상 외박 시에는 1일 전에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통신) 전화 및 우편물의 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내, 시외, 국제전화통화는 개인 휴대폰 및 생활관내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고, 각 호실에 설치된 전화기는 생활관 및 대학 구내통화에 한정한다.
2. 일반우편물은 수취함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특수우편물(등기, 소포, 택배)은 관리실에서 수취인이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한다.

제6조 (호실 배정 및 변경) ① 호실 배정은 관장이 하며, 일단 배정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호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호실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외부인 출입제한) ① 외부인을 생활관내에 대동할 수 없다.

② 외부인의 생활관 출입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대장 기재 후 출입증을 받아 받아 허용한다.

제8조 (취사금지) 생활관 내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 (세탁) 관생은 세탁실에서 세탁을 하여야 하고 공동사용 공간에서는 세탁물을 건조할 수 없다.

제10조 (일과) 일과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은 계절과 상황에 따라 일과시간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6.13.)(개정 2015.11.18.)(개정 2019.05.29.)

구 분	시 간	비 고
출입문 (정문)	0:00~24:00	
출입문 (측문)	개방하지 않음	휠체어, 카트이동 및 비상시에만 개방
인터넷카페	06:00 ~ 01:00	
세탁실	06:00 ~ 01:00	
다리미실	06:00 ~ 01:00	
체력단련실	06:00 ~ 01:00	
세미나실	06:00 ~ 01:00	

제11조 (전기사용 및 제한품목) ① 전기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② 제한되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기제품 등은 반입 및 사용을 금하며 발견 시는 회수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④ 허용되지 않은 전기제품 등을 반입 또는 사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변상)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원파악) 정기 또는 수시로 인원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행사 및 집회) ①행사 및 집회는 5일 전에 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②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단체행동은 금한다.

제15조 (공고문 게시 및 방송) ①관장이 게시한 공고문은 모든 관생이 반드시 읽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모든 공고문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포상 및 훈계) ①관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한 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08.10.13)

②관장은 질서유지를 위해 관생을 훈계할 수 있고 필요시 벌칙행위의 정도에 따라 관생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 (퇴거) ①퇴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퇴거원(소정양식)을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퇴거 시에는 열쇠 등 기타 지급품을 반환한다.

제18조 (벌점 및 퇴거기준) ①관장은 벌칙행위를 한 관생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퇴거명령을 내리거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자는 퇴거하여야 한다.

③사안에 따라 벌점부과와는 별도로 손해 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제19조 (퇴거절차) 벌점에 의한 퇴거처분인 경우에는 익일 퇴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 휴학자 및 자진 퇴거인 경우에는 사전에 퇴거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별표 1>(개정 2019.11.06.)(개정 2020.10.26.)

구 분	품 목	허용여부
전열기기	전기담요	비 허용
	전기장판	비 허용
	전기히터	비 허용
	팬 히 터	비 허용
취사기기	커피포트	비 허용
	커피메이커(드립퍼)	비 허용
	토스터	비 허용
	전자레인지	조건부 허용
	전기프라이팬	비 허용
	가스버너	비 허용
	전기밥솥	비 허용
	핫플레이트	비 허용
	쿠 커	비 허용
음향&영상기기	비 디 오	비 허용
	T V	비 허용
	전자악기	비 허용
학습기기	스 태 ند	허용
	노 트 북	허용
	프 린 터	허용
기 타	선 풍 기	비 허용
	냉 장 고	조건부 허용
	에어컨미니	비 허용
	청소기	허용
	헤어드라이어	허용
	어학기, 충전기	허용

<별표 2>

위 반 내 용	별점
1. 절도 및 강력 범죄 행위	퇴실
2. 이성숙소 무단출입 또는 동반출입 및 방문하게 한 행위	퇴실
3. 인화물질 반입 및 실화 - 인화물질에는 (부탄)가스, 시너, 휘발유 등이 해당됨.	퇴실
4. 무기정확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퇴실
5. 무단 호실 변경	8
6. 공용비품 외부 반출, 고의적 파손 및 사유화	8
7. 외부인을 관내에 숙박시키거나 무단 대동 입실하는 행위.	8
8. 동물 사육	8
9. 허가되지 않은 전기기구 및 전열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10. 이성 구역 무단출입 - 이성 구역 출입 시 거주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	8
11. 음주 인사불성, 음주소란, 음주추태, 관내음주 / 도박행위	8
12. 실내에서의 취사	8
13. 고의로 공유재산인 네트워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14. 관장이나 직원의 사실 점검과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5
15. 소란과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	5
16. 허가된 전기용품 관리 부주의	5
17. 지정된 흡연지역 외에서의 흡연 (기숙사 모든 구역 금연(외부공간 포함), 지정된 흡연공간은 제외: 흡연부스)	5
18. 각종 음식배달	5
19. 공용장소 무단점용 - 공용장소란 휴게실, 복도, 비상계단 등 사생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개인 물건 비치할 경우 별점 차등 부과.	5
20. 관내 장소나 기물에 허가되지 않은 광고지나 전단지치 등을 부착하는 행위	3
21. 기숙사 출입규칙 위반	3
22. 관내 주류 및 주류용기반입	3